

결혼식 때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글/김성천<한국소비자보호원 법제연구팀장>

결혼식은 개인에게는 평생에 한번 있는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집안의 경사다. 그런데 결혼식 때 예식장 사용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일부 예식장은 웨딩드레스 이용을 강요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부대품이나 부대 시설 비용을 징수한다. 또한 사진·비디오 촬영과 관련된 피해도 다양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할 때 소비자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예식장 업자·촬영업자는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판례 ①

P씨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예식장에서 오후 1시 30분에 예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수개월 전 예약을 마쳤다. 결혼식 10일 전 예식장측이 1시간 30분으로 정해진 예식 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해 진행함에 따라 그 전 결혼식 하객과 P씨의 하객이 뒤섞이는 등 혼란스러운 가운데 예식이 진행되어 자신의 체면이 손상됐으며 소송을 제기했다.

결혼식장과 부대 시설을 제공하는 예식장은 예식 시간의 시간 간격을 충분히 확보해 줌으로써 결혼 당사자와 가족 및 하객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시간 30분 소요되는 예식 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해 P씨는 예식 전에 하객을 접대할 여유조차 갖지 못하고 서둘러 식장에 입장하게 됐다. 또한 P씨 앞에 거행된 결혼식 하객과 P씨의 하객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가운데 결혼식이 거행됐다.

법원은 'P씨와 그 가족의 체면이 손상되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인정된다'며 '예식장측은 박씨에게 위자료로 7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례 ②



K씨와 L씨는 M스튜디오라는 사진관을 경영하는 C씨에게 자신들의 결혼식 장면에 대한 사진 촬영을 45만6천 원에, 비디오 녹화는 12만원에 의뢰했다. 결혼식 당일 사진 촬영은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촬영 기사의 잘못으로 50분간의 비디오 녹화 시간 중 처음 10분간 식전 야외에서의 녹화 부분만 정상적으로 재생되었을 뿐 그 이후 결혼식 장면부터 폐백에 이르는 녹화 종료까지의 영상은 흰선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선명하지도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사진관을 경영하는 C씨에게 비디오 녹화 기사가 결혼식 장면을 제대로 녹화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K씨와 L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결혼식 장면의 녹화가 제대로 안 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그들 각각에 대하여 1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사용하지 않은 부대품·부대 시설에 대해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없고, 소비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 금액은 환급해 주도록 돼 있다. 결혼식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식장과 사진관을 선정할 때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과 관련된 광고지·계약서 등 증빙 자료는 잘 보관하고 있어야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가 쉽다.●